

우리 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에 관한 研究

南 相 午

.....<目 次>.....	
I. 序 論	調整
II. 日本會計 도입의 功過	V.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
III. 美國會計도입의 必要性과 問題點	1. 財務諸表
IV.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	2. 資產의 測定과 評價
1. 會計規制機關과 會計基準制定機構	3. 負債의 測定과 資本의 變動
2. 會計基準의 制定根據과 性格	4. 其他의 制度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와 差異	VI. 結 語

I. 序 論

우리 나라會計는 기본적으로 日本會計에 기초하여 정립되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아 오고 있다. 최근 美國會計의 영향이 커지고 있지만 日本會計는 우리나라 會計의 기반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會計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우리나라會計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日本과 美國의 두 會計가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會計의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會計는 다음의課題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① 우리나라會計는 日本會計와 美國會計중 어느 會計를 주로 따를 것인가?
- ② 두 會計의 長點은 어떻게 取捨選擇하여 받아들이고, 日本과 美國에서 겪었던 試行錯誤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 ③ 두 會計를 도입·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政治·經濟·社會·法律制度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 ④ 우리나라 고유의 會計制度를 개발·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나라會計가 日本會計와 美國會計를 도입하면서 얻은 功過는 會計分野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法令이 日本의 法令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美國의 法令을 참고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例로서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 이 논문은 嵩山財團의 財政支援으로 작성된 것으로, 연구를 지원한 現代 그룹에 감사드린다.

우리나라의 商法, 稅法, 정부의 다른 많은 法令이 日本의 것을 복사하여 제정되었고, 日本의 法令이 개정되면 우리나라의 해당 法令도 그에 따라 개정되는 경향도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法令은 처음에는 日本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내용이 우리나라 설정에 비추어 수정되거나, 나쁜 쪽으로 변질되거나,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도 하였다.

日本會計와 美國會計의 영향하에 있는 우리나라會計에 있어서 앞으로 會計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美·日會計에 비교하여 우리나라 會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나라 고유의 會計慣習이나 實務를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論文의 目標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本稿는 이미 우리나라會計의 일부가 되어버린 日本會計 보다는 美國會計와 우리나라 會計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會計의 發展方向을 美國會計를 보다 많이 받아들이는 것에 둘으로써 會計의 質을 높이고 國際會計의 潮流에 보다 근접하는 관점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이상의 目的을 위하여 日本會計 도입의 功過와 함께 美國會計 도입의 필요성 및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會計와 美國會計의 비교를 會計制度의 차이와 會計基準의 차이에 대해 수행하기로 한다.

II. 日本會計 도입의 功過

우리나라會計는 다른 社會制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日本制度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 首頭에 언급한 바와 같이 日本會計는 우리나라會計의 기초가 되었었고, 현재에 있어서도 支柱과 骨格을 이루고 있다. 會計制度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會計基準의 生成·發展過程을 보면 우리나라 會計가 日本會計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會計規範인 企業會計基準은 1958年 처음 제정되었는데,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의 명칭과 내용은 日本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複寫版이었다. 이때에는 發表形式도 中間報告로 日本과 같은 형식이었다.

企業會計規定은 그후 두 차례 개정되었다.

1次改正은 1974~76年の 企業會計原則·財務諸表規則의 개정과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의 제정이었다. 이때의 개정은 證券管理 목적의 上場法人會計의 도입으로 日本會計에 의한 것이 아닌 美國의 證券去來法에 의한 規則 S-X의 규정이 企業會計規定에 도입 또는 결합되는 형태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1次改正에 있어서는 대부분 日本의 企業會計規定의 改正內容을 받아들여 日本會計

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美國會計의 도입으로 생각될 수 있었던 것은 聯結財務諸表와 附屬明細書로서의 資金運用表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들 항목도 日本의 會計基準 개정논의에서 채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2次改正은 1981年 企業會計基準의 제정이다. 이때의 개정은 企業會計와 上場法人會計로 2元化되었던 會計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었다. 2次改正의 두드러진 특색으로는 比較財務諸表, 財務狀態變動表, 外貨換算方法, 前期損益修正과 會計變更 등 美國制度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두 차례의 企業會計規定이 있었지만 日本會計가 우리나라會計의 根幹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고, 점차적으로 美國會計의 영향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會計가 日本會計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 것은 다음의 이유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是 日本과 동일한 文化圈內의 국가로서, 두나라는 文化나 制度가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極東의 隣接國으로서 같은 東洋圈에 속하여 동일한 東洋文化圈內에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文化圈內의 민족들은 피부색깔이 비슷하고, 宗教가 비슷하며, 동일한 곳으로부터 文化가 유래하거나 영향을 받음으로써 비슷한 文化를 형성하게 되고, 비슷한 會計制度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日本의 장기간의 통치로, 日本의 政治·經濟·社會制度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었다. 이로써 日本式의 制度는 우리나라의 制度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制度로도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많은 法令, 會計基準이 日本의 것과 닮은 끌이고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日本이 같은 文化圈內의 국가라는 점이 외에도 日本의統治가 우리나라의 制度面에 미친 영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째로, 日本의 會計教育方式이 해방전 부터 우리나라의 學校教育에 도입되고, 日本의 大學에서 교육받은 우리나라의 會計學教授들이 日本式의 會計教育을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日本式의 會計教育이 도입되었다. 日本式 會計는 會計教育 뿐만 아니라 會計基準, 會計實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日本式의 會計教育은 주로 簿記教育이라고 할 수 있어, 理論이나 概念의 탐구보다는 實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절차를 다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하여 日本의 簿記教科書가 번역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책이 출판되어 日本式의 會計教育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네째로, 우리나라是 日本과 비슷한 會計環境을 갖고 있고, 企業形態도 유사하며, 기업의

活動樣式도 유사하므로 日本의 會計制度를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政府 주도의 經濟, 經濟成長 위주의 經濟政策, 輸出 지향의 經濟, 財閥 중심의 經濟構造, 政府部門에 의한 會計規制 등 日本과 비슷한 經濟體制를 갖고 있다. 이로써 日本과 비슷한 經濟發展의 形태를 갖고 있어 日本制度가 바람직한 制度이고 規範的 制度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네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비판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日本과 동일한 文化圈內의 국가이므로 우리나라의 會計가 日本會計와 비슷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이 世界에서 會計의 最先進國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會計가 日本會計를 추종할 것 없이 보다 더 발전된 會計의 先進國으로부터 會計理論이나 會計實務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신속한 會計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

日本式의 制度가 우리나라의 制度처럼 생각되거나 적합한 것이라는 思考 역시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日本의 法令 또는 會計基準을 그대로 복사하여 制度化함으로써 어떤 制度를 만드는데 소요되어야 할 努力과 費用은 크게 절약할 수 있었으나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會計의 자주적인 발전이 무시되었고, 日本會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때로는 自主性이 상실되는 결과도 빚었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처음에 日本會計를 도입하였으나, 그후 日本會計에서 문제가 많아 폐지되었던 會計制度를 존속시킴으로써 부적절한 會計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資產再評價制度는 日本에서 1950年 도입하여 20년간 존속한 후에 폐지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 제도를 인정함으로써 會計濫用(accounting abuse)의 표본이 되었다.

日本制度가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 미친 분야의 하나로 특히 會計의 側面에서 볼 때에, 商法·稅法의 企業會計基準에 대한 영향과 이들 규정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商法은 一般法으로서 商去來의 最高法律로 군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會計관련의 규정중 最高法律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最高法律로 인식되고 있다.

會計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商法, 稅法, 企業會計基準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商法의 규정이 다른 규정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또 企業會計基準은 商法, 稅法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되거나 이들 규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商法, 稅法의 下位規定으로 운영되어 왔다.

商法은 債權者保護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의 다변화된 이해관계자의 情報欲求나

여러 이해관계자보호를 의면하고 있다. 오늘날 이해관계자중 投資者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 용자라고 할 수 있는데, 投資者保護를 위한 法規는 特別法인 證券去來法이나 株式會社의 外部監查에 관한 法律에 위임함으로써 商去來의 最高法律로서의 商法의 지위가 격하되고 있다. 商法이 最高法律이 되기 위해서는 投資者, 債權者, 消費者 등 모든 정보이용자를 위한 法律이 되어야 하며, 商去來에 관련한 모든 法이나 會計規定의 上位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商法에서는 여타의 商去來에 관련한 法, 會計規定에 대한 大原則을 중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세한 규정은 다른 곳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商法에서는 企業會計의 존중,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조정 등에 대한 大原則 등을 규정할 수 있으며, 移延資產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항은 企業會計基準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式의 簿記教育은 會計學의 不毛地였던 우리나라에 會計學을 심어주고, 우리나라의 會計水準을 높여주는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簿記教育에 힘입어 기업의 會計帳簿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었고, 會計實務를 맡는 經理擔當者도 많이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日本式의 會計教育은 理論보다 實務를 강조하여 機械的·反復的 學習을 중요시하였다. 實務 위주의 日本式 會計는 理論·實務의 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고차적 現代會計理論(예, 資本市場理論)을 설명할 수 없었고, 앞서 나아가는 기업의 會計實務에도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經濟成長과 國際化로 다변화된 企業環境에 맞는 會計가 정립될 필요가 있었는데, 日本式 會計로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었다.

네번째 이유 역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日本式의 經濟制度가 이상적이 아닐 수 있고,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타난 日本式의 會計制度가 꼭 바람직한 제도만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財閥 또는 綜合商社에 대한 聯結財務諸表가 美國式의 聯結財務諸表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結合財務諸表가 되어야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III. 美國會計 도입의 必要性과 問題點

美國會計는 日本會計에 비하여 뒤늦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8·15 解放이후 6·25를 겪으면서 美國의 우리나라 政治·經濟·社會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우리나라企業이 美國으로부터 借款을 도입하거나 美國企業이 우리나라에 合作企業의 형태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의 會計는 美國會計의 영 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처음 美國會計는 우리나라企業이 美國 借款先의 요구에 따라 美國 CPA Firm의 會計監査를 받도록 하거나, 合作企業이 美國本社의 會計規定(美國의 GAAP)에 일치하여 外國報告用으로 財務諸表를 작성하는 데 영 향을 미쳤다. 美國會計가 企業會計基準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과거의 企業會計原則이나 上場法人規定에도 약간 영 향이 있었으나, 1981年 제정된 企業會計基準에서 比較財務諸表 및 財務狀態變動表의 작성, 外貨換算方法, 會計變更 및 前期損益修正 등으로 美國會計를 상당부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美國會計의 도입이 소망스러운 것은 다음의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로, 美國은 會計의 最先進國으로서 世界의 會計를 주도하는 국가이고 會計의 質的水準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會計發達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태리를 거쳐 英國이 會計의 중심국가이었으나, 20世紀에 접어들면서 世界會計의 중심은 美國으로 이행되게 되었다. 日本會計도 종전에는 獨逸會計의 영 향을 받아 왔었으나, 오늘날에는 美國會計를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美國이 會計의 尖端國으로서 先進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人的資源을 투입하고 풍부한 財政이 뒷받침됨으로써 여러 會計問題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研究調查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에서는 會計學會, FASB, SEC, 會計士會, 會計法人이 五位一體가 되어 會計研究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研究結果가 쏟아지고 있고, 이 研究結果는 궁극적으로 會計基準에 반영되어 會計實務를 개선시키는 데에 공헌하고 있다. 이로써 美國은 가장 높은 會計水準의 국가인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會計는 國際會計의潮流를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國際化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企業會計도 國際會計의 추세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國際會計의潮流를 따라야 한다는 점은 世界的趨勢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企業의 國際的活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國際化의 完成段階라고 할 수 있는 資本自由化的 단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 國際會計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會計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際會計의 방향으로 會計를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會計制度를 도입함에 있어서 會計의 最先進國인 美國의 會計를 보다 많이 도입할 것이 요청된다. 과거에는 日本會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日本이 美國會計를 많이 도입하거나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日本會計로부터 先進的 會計制度를 우회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美國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더군다나 會計의 質的水準이 가장 높고 가장 會計制度가 발전된 나라로부터 會計制度를 도입하여야 하

지 次善의 國가로부터 會計의 模範國인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또는 낙후된 會計制度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세째로, 우리나라 會計는 國際會計의 潮流를 따르는 것이 요청되고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美國會計의 도입이 요망된다. 기업이 國際化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企業會計도 國際會計의潮流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國際會計의潮流를 따르는 것은 國際化의 최종단계 또는 經濟發展의 完成段階라고 할 수 있는 資本自由化의 단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企業이 海外起債를 하거나 외국의 資本市場에 株式을 상장하여 資本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의 會計水準은 國際的 水準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우리나라 會計가 國際會計를 따름으로써 國際會計의 통일에도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會計水準도 高揚되는 것이다.

현재 國際會計의主流는 美國과 유럽의 會計라고 할 수 있다. 원래 美國會計가 유럽會計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던 만큼 두 會計는 서로 유사한데, 20世紀에 와서는 美國이 會計의最先進國이 되어 사실상 美國이 國際會計의 先導役을 담당하고 있다.

네째로, 證券市場의 발달과 더불어 投資者保護 등 여러 정보이용자를 위한 會計, 정보이용자에 대한 會計情報의 公示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 美國會計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日本會計가 商法을 商去來의 最高法律로 생각하여 債權者保護를 중요시하였고, 會計에 관한 사항을 株式會社의 計算書類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은연중에 會計는 商法의從屬物로 취급하여 投資者 등 기업의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경시되었다. 최근에는 投資者保護 등은 證券去來法에 規制權을 위임하는듯 하여 商法은 商去來의最高法律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商法이 商去來의 最高法律로 되기 위해서는 債權者 뿐만 아니라 投資者 등 많은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제공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商法은 商去來에 관한 大原則을 중심으로 규정하여, 金融團協定(與信管理規程), 證券去來法, 企業會計基準, 稅法 등 商去來와 관련된 諸規定의 母法으로서 基本法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會計에서는 證券市場 중심으로 會計理論을 전개하여 投資者保護와 會計情報의公示가 중요시되고 있다. 會計의 目的을 “投資者·債權者 등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에 두고 있어,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債權者保護 중심의 會計가 강조되었지만, 앞으로는 投資者 등 여러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요시하여 이러한 美國會計의 흐름이 보다 많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우리나라 會計의 基礎가 되었던 日本會計를 비판하고, 보다 많은 美國會計의 도입·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美國會計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다음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美國會計는 美國의 會計環境에서 생성된 것으로, 우리나라나 日本의 會計環境과는 크게 다른 環境 속에서 會計基準이 정립되어 會計環境과 文化的 差異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會計環境에 적합하고 文化的으로 受容될 수 있는 것만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하지 文化的 差異가 큰 制度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는, 지나치게 美國會計에 의존하거나 美國會計의 무분별한 도입은 과거의 日本會計 도입시와 비슷한 試行錯誤와 졸속의 잘못을 범할 우려도 있다. 美國會計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例로는 聯結財務諸表와 財務狀態變動表가 있다. 日本會計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잘못된 會計로 나아간例로는 資產再評價制度가 있다. 資產再評價制度는 日本에서는 도입한 얼마 후에 폐지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어 永久法으로 존재함으로써 企業會計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기업의 會計資料의 比較性과 信賴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本稿는 앞으로 우리나라 會計의 방향이 日本會計 보다는 美國會計가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를 하기로 한다. 會計比較는 會計制度와 會計基準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會計의 改善策을 다루어 앞으로 있을 企業會計基準의 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V.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

——會計制度의 차이——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를 먼저 制度의 差異부터 서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會計制度의 特徵的인 面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會計規制機關과 會計基準制定機構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政府가 강력한 會計規制를 수행하고 있다. 會計環境이라고 할 政治·經濟·社會的 環境에 있어서 政府에 權力이 집중되고 있어 會計規制에 있어서도 政府에 모든 會計規制權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會計規制와 會計基準의 정립이 政府部門(government sector)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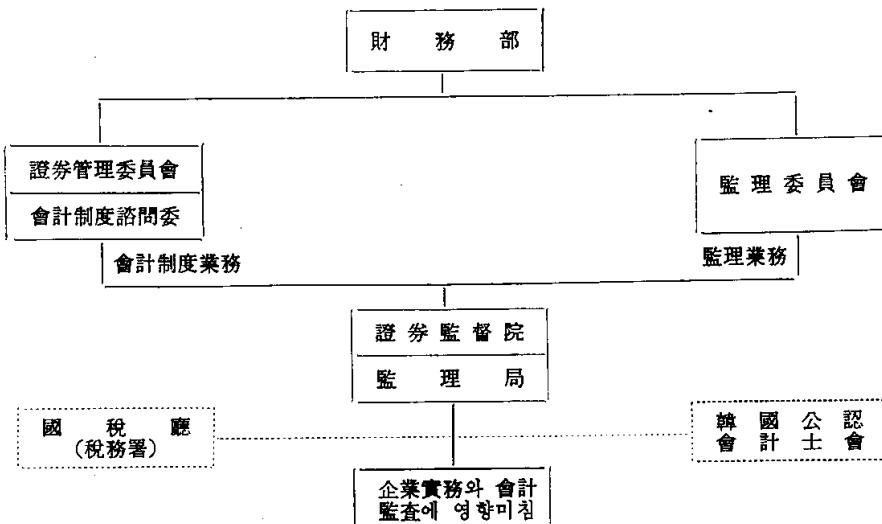
원래 會計規制는 公共部門(public sector), 民間部門(private sector), 政府部門(government sector)의 세 部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政府部門은 公共部門과 유사하나, 전자는 政府가 모든 會計規制權을 갖고 있어 政府에 權限의 集中化(centralization)가 되어 있는 데 비하여, 후자는 公共機關에 會計規制權이 위임되어 있어 公共機關이 獨립적 기관으로서 自律性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會計制度의 수립, 會計規制, 會計基準의 정립, 會計實務의 관장은 財務部, 證券管理委員會(證券監督院)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會計業務 이외에도 證券管理, 投資者의 보호, 기업의 財務構造 개선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上場法人과 新株 및 社債發行의 登錄法人,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따른 대상법인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會計基準制定機構로는 財務部와 證券管理委員會의 會計制度諮詢委가 있다. 會計基準의 제정은 財務部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실제의 제정업무는 會計制度諮詢委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會計制度諮詢委는 FASB와 같이 獨립적이며 會計基準을 결정하는 全權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財務部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證券管理委員會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 우리나라의 會計規制機關이 그려져 있다. 財務部를 頂點으로 하여 證券管理委員會와 監理委員會가 會計規制의 諮問·議決機構가 되고 있으며, 證券監督院이 業務實行

<그림 1> 우리나라의 會計規制機關*



* 實線은 直接規制의 흐름 · 點線은 間接規制의 흐름

機關이 되고 있다. 國稅廳은 稅法에 의해 會計規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韓國公認會計士會는 意見, 事例, 監查準則의 제정 등 구체적 會計實務指針을 제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會計規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政府 주도의 會計規制는 政府 주도에 의한 會計基準의 정립, 稅務會計 위주의 會計, 資本市場에 대한 규제, 기업에 대한 財務管理·與信管理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會計規制權과 會計基準制定權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 있는가를 비교하여 보자.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政府部門에 이들 권한이 있다. 大藏省에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會計基準을 제정하는 企業會計審議會는 大藏省 소속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證券管理委員會나 證券監督院이 존재하지 않고 大藏省에서 會計規制를 전담하고 證券去來所에 規制權의 일부가 약간 있을 뿐이다.

英國의 경우에 會計規制權은 民間部門인 證券去來所에 있고, 會計基準制定權은 잉글랜드·웨일즈·스코트랜드·아일랜드 勅許會計士의 대표들로 구성된 會計基準運營委員會(ASSC, Accounting Standards Steering Committee)에 있다. 벤斯顿(Benston)은 英國의 民間部門에 의한 會計規制를 찬양하고, 美國의 證券去來委員會(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활동에 불만을 표시하여 미국에서의 SEC에 의한 公共部門의 규제는 證券去來所와 같은 民間部門의 會計規制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

美國에 있어서 會計規制權은 公共部門인 SEC에 있고, 會計基準制定權은 民間部門인 財務會計基準審議會(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있다. SEC는 政府機關이지만 獨立的 規制機關으로 準司法的 機關도 되고 있다.

SEC는 설립이래 美國의 會計發展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호온그랜(Horngren)은 심지어 “SEC는 最高經營者이고, APB(FASB의 전신)는 下位管理者이다.”라고 하여 SEC가 會計基準制定機構 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현재까지 SEC는 會計基準을 직접 제정하기보다는 민간기구인 APB, FASB에 會計基準制定權을 위임하여 會計情報의 適正公示와 같은 投資者保護를 위한 公示問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버튼(Burton)은 “AICPA (FASB가 창설되기 이전)와 SEC는 組合의 관계에 있어 상호 협조하는 기관이지 SEC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1) George J. Benston, “Public (U.S.) Compared to Private (U.K.) Regulation of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Accounting Review* (July 1976), pp. 483-498.

(2) Charles T. Horngren, “Accounting Principles: Private or Public Sector,” *Journal of Accountancy* (May 1972), p. 38.

하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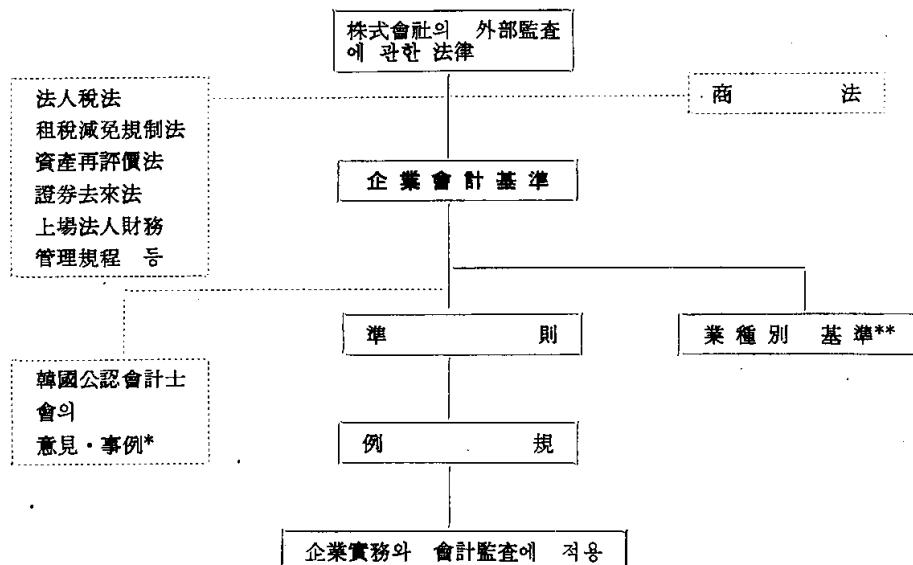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있어서 會計規制權과 會計基準制定權은 모두 財務部에 中央集權되어 있어서 政府部門에 의한 會計規制, 會計基準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하게 證券管理委員會나 證券監督院이 존재하지만 이들 기관은 獨립적 기관이라기 보다는 財務部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어 政府部門의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2. 會計基準의 制定根據와 性格

企業會計基準은 이전의 會計規定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의거 제정되어 法律의 源泉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法條文形式으로 항목이 나열되어 法規처럼 되었다. 종전의 企業會計原則이 企業會計의 유지·발전을 도모하여 會計慣習중 공정타당한 것을 요약함으로써 自生的으로 정립된 것에 비하여 法律과 行政에 의한 他律에 의해 정립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會計基準(會計原則)의 體系는 <그림 2> 처럼 그릴 수 있다. 그림에서 企業會計基準은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로부터 유래함으로써 이 法律이 企業會計基準보다 上位法임을 알 수 있다. 商法이 우리나라 商去來의 最高法律로 인정되어 온 데 대하여 그림에서 商法은 企業會計基準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會計基準의 體系



* 사실상 폐기됨.

** 현재 建設業의 基準이 제정되었고, 앞으로 계속 제정될 예정임.

(3) "Paper Shuffling and Economic Reality," an interview with John C. Burton,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73), p. 26.

會計規定은 ① 企業會計基準, ② 準則, ③ 例規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法令이 ① 法, ② 令, ③ 規則의 3단계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業種別 基準은 特殊業種의 會計基準으로서 企業會計基準을 기본으로 정립되나 一般企業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企業會計基準과 비슷하거나 하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法人稅法 등 諸法令과 韓國公認會計士會의 意見·事例는 우리나라의 企業會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다.

美國에 있어서 會計基準은 企業會計의 演進과 성장을 위한 企業會計基準만을 의미하고 있다. 會計基準은 企業會計, 上場會社會計, 稅務會計의 會計基準으로 3分될 수는 있으나, 이들은 각각 獨立적으로 존재하고 다른 會計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會計 고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會計規範인 財務會計基準을 따르고,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規則 S-X나 稅法을 규정하고 있다.

企業會計의 會計基準은 FASB의 財務會計基準(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ICPA의 APB Opinion, ARB로 되어 있고, 法律이 아닌 상당한 權威를 가진 專門家로 구성된 기구인 FASB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은 法律에 의하여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企業會計·上場法人會計·稅法의 혼합이라는 점에서 美國의 규정과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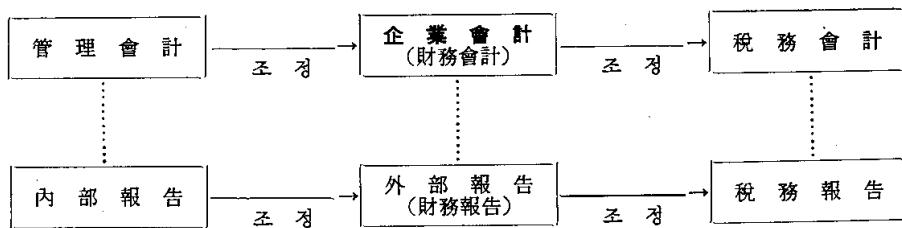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와 差異調整

우리나라에서는 稅務會計가 會計實務에서 企業會計의 原則보다 존중되고 있다. 稅務會計는 본래의 목적이 租稅의 확보, 衡平課稅에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會計實務에 간접함으로써 企業會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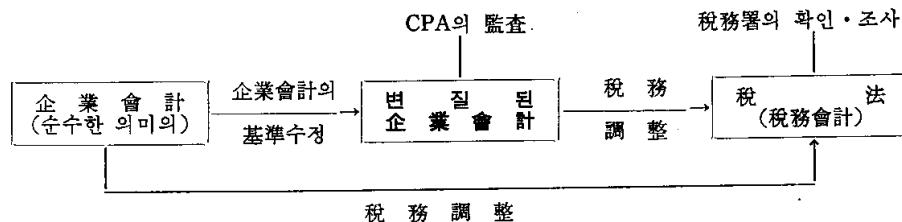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로는 貸損充當金의 설정, 退職給與充當金의 설정, 特別減價償却, 收益의 인식, 諸準備金(예, 技術開發準備金) 등이 있다. 이들 중에는 財務部의 行政指示인 證二나 稅務調整안으로 그 차이가 해소된 것도 있으나, 이러한 해결방법은 어디까지나 政府나 法의 간섭에 의한 行政的 解決이지 원래의 企業會計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稅務會計의 企業會計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이들 두 會計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差異點을 해소하고자 하여 稅務會計가 企業會計에 일치하기 위한 稅法의 개정(예, 準備金의 경우)이 있거나, 企業會計가 稅法을 받아들이는 규정을 제정하는 수가 많았다. 후자의例로는 企業會計基準에 資產再評價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稅法에 따른 減價償却方法의 인정 등이 있다.

〈그림 3〉 管理會計, 企業會計, 稅務會計의 관계



〈그림 4〉 변질된 企業會計



〈그림 3〉은 이상적인 企業會計가 수행되기 위하여 管理會計, 企業會計, 稅務會計의 세會計가 分化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그린 것이다. 세會계간의 차이는 調整에 의하여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4〉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企業會기는 순수한 企業會計가 아니라 변질된 企業會計로서 稅法에 의한 수정인 것이다. 이러한 변질된 企業會計에 대해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查가 이루어지고, 약간의 稅務調整을 하여 실제의 稅法과의 갭을 조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美國에 있어서도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상호 독립적이어서 稅務會計 一邊度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稅法은 會計 고유의 사항은 財務會計基準을 會計規範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또 稅法과 企業會計와의 차이는 稅務調整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고, 企業會計에서 法人稅配分制度를 인정하여 會計上의 利益과 稅務上의 利益의 차이를 企業會計의 측면에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다.

V.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比較

—會計基準의 차이—

會計基準의 차이는 우리나라 會計의 특징적인 면이면서도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과 美國의 會計規定인 ARB, APB Opinion, FASB의 SFAS와 비교한 것이다.

1. 財務諸表

(1)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

우리나라는 個別財務諸表가 중심이나 美國은 聯結財務諸表가 중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個別財務諸表로 財務報告가 이루어져, 決算報告는 물론 稅務申告, 證券去來所에의 上場도 個別財務諸表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美國에서는 聯結財務諸表에 의해 決算報告, 證券去來所에의 上場이 이루어지고 있고 稅務申告上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個別納稅申告 또는 聯結納稅申告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聯結財務諸表는 制度化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원래 聯結財務諸表는 그룹全體에 대하여 산하의 系列企業을 연결하여 하나의 經濟的 實體로서 會計報告書가 작성되도록 의도되었는데, 이러한目的이 변질되어 그룹全體가 아닌 그룹內의 1個企業이 다른企業 1, 2個를 연결하는 정도로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어 母會社 없이 子會社·孫會社끼리만 연결하는 변칙적인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되기 어려운 것은 그룹企業에 있어서 뚜렷한 支配會社·從屬會社가 존재하지 않고, 特定個人(주로 創業主 또는 그 後孫)이나 이의 特殊關係人 중심의 自然人에 의한 株式所有關係가 형성되고 있어 聯結財務諸表 작성의 基本要件인 過半數支配에 의한 作成要件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룹內의 系列會社간에 交叉所有(crossholdings)에 의한 株式所有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경우 복잡한 持分計算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聯結財務諸表가 작성될 필요성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國民經濟에 있어서 經濟活動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룹企業에 대하여 어떤 會計報告書도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현재 작성되고 있는 聯結財務諸表는 그룹企業의 財力を 그룹單位로 표시하는 經濟的 實質(economic substance)의 會計報告書라고 볼 수 없어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2) 貸借對照表上 處分後 利益剩餘金을 계상하는 문제

우리나라·日本의 貸借對照表에 계상되는 利益剩餘金은 處分後의 期末殘額이 아니고 未處分이라는 점이 美國·英國의 貸借對照表와 다르다. 配當金·積立金 등이 처분되지 않은 利益剩餘金을 貸借對照表에 계상함은 전년도의 會計帳簿를 마감하지 않은 채 會計報告書를 작성하는 결과가 된다. 이로 말미암아 未支給配當金이 流動負債로 계상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와 日本의 商法에서는 株主總會에서 利益의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에서 주장된다. 그러나 決算期末에 기업의

利益規模는 거의 확정되고 또 理事會의 결의가 대부분 그대로 株主總會에서 통과되므로 處分畢의 利益利餘金을 貸借對照表에 표시하도록 현행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損益計算書上 株當純利益(earnings per share)을 표시하는 문제

우리나라에는 株當純利益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美國에서는 損益計算書의 하단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중요시하고 있다. 株當純利益은 投資指標로 매우 중요시되는 개념으로 投資意思決定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美國에서는 株當純利益을 單純資本構造(simple capital structure)에 의한 株當純利益과 複雜資本構造(complex capital structure)에 의한 株當純利益(이 경우에는 primary EPS와 fully diluted EPS의 두 가지 株當純利益을 계산·표시)으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株當純利益은 證券監督院에 제출하는 事業報告書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公示效果가 크지 않아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株當純利益이 건전한 投資環境을 조성하는데 유익한 會計指標라고 판단될 경우 이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經常項目과 特別項目의 구별문제

원래 特別項目이란 非正常的(臨時的) 성격, 發生頻度의 희소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해 분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流動性·非流動性項目의 구별에 따라 固定資產處分損益 등은 特別項目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備品, 小道具의 賣却損益을 特別損益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美國의 경우 特別項目은 災害損失, 沒收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損益計算書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固定資產處分損益, 企業讓渡損益 등도 經常的去來로 보아 經常項目으로 하고 있다. 特別項目에 正常項目을 포함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經營成果에 대한 판단을 흐릴 우려도 있는 것이다.

(5) 財務狀態變動表의 개선

우리나라에서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財務狀態變動表를 財務諸表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지만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만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美國의 財務狀態變動表에 비교하여 다음의 개선점이 있을 수 있다.

- ① 樣式이 단순화·간단화되어야 하고, 용어도 알기 쉽게 바꾸어야 한다.
- ② 기업의 投資·財務活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計定科目을 정리하고, 重要性原則에 입각하여 重要度가 낮은 計定科目은 없애야 한다.

- (3) 總財務資源概念에 의한 純運轉資本의 收入・支出이 없는 去來는 註釋하거나 중요한 去來만 있을 경우 財務狀態變動表上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財務狀態變動表를 기본적으로 純運轉資本 중심으로 작성하되 現金・預金에 의한 財務狀態變動表도 기업이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6) 會計變更의 문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에서는 會計變更의 종류로 會計基準의 변경과 會計推定의 변경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회계처리 방법은 소위 前進法에 의한 未來的 處理方法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美國의 해당 會計規定인 APB Opinion No. 20에서는 會計變更의 종류로 報告實體의 변경을 추가하고 있고, 회계처리방법은 前進法 이외에도 遷及法, 當期處理法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會計變更의 종류에 報告實體의 변경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주요 從屬法人을 처분하거나, 여러 事業部門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重要部門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事業內容을 크게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會計處理方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遷及法과 當期處理方法의 채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比較財務諸表가 작성되고 있어 直前年度와 當該年度의 회계정보가 동시에 기재되고 있는데 過去年度에 대해 소급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2. 資產의 測定과 評價

(1) 資產再評價制度의 폐지검토

우리나라에서는 資產再評價法에 따라 資產再評價를 허용하고 있고, 企業會計基準에서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생각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資產評價에 대해서는 歷史的 原價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FASB의 SFAS No. 33에서 인플레이션會計情報과 物價變動會計와 現行原價會計의 두 경보로 나누어 補充的情報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資產再評價制度는 1958년 도입된 이래 기업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고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社內留保의 확대로 擴大再生產을 가능케 하고 施設改替에 도움이 되었으며, 企業公開의 과정에서 創業者利得을 보호하여 公開를 촉진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再評價가 기업 임의로 시행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기업만 실시하고, 기업의 계정중 일부만 재평가하는 등으로 기업간, 기간간 會計資料의 比較性을 상실하였다. 더군다나 이 제도는 기업의 原價를 높여 製品價格의 상승을 유발하였고, 會計資料의 왜곡을 심화하였으며, 일시적으로 당기의 社外流出은 줄였으나 資本轉入

에 의하여 영구적 配當壓力을 초래하여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를 유도한다고 비판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資產再評價制度의 功過를 검토하여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또는 보충적으로 인플레이션회계情報を 공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資產중 중요항목인 有價證券, 在庫資產, 有形固定資產에 대한 時價를 註釋으로 공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로써 財務諸表의 計定 자체를 수정하는 資產再評價制度로 인한 會計資料에 대한 信賴性은 향상될 것이다.

(2) 有價證券의 평가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에서 有價證券은 原價로 평가하되 低價主義에 의하고, 總平均法과 移動平均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種目別 基準과 總計基準으로 평가하고, 種目別 基準에 의할 경우 原價로의 評價增을 부인하며, 時價는 決算期前 1月의 終價平均이고, 時價가 계상될 경우에는 帳簿價額 보다 30%이상 하락한 경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美國의 경우에는 個別法, 先入先出法이 인정되고, 總計基準만이 사용되며, 原價로의 評價增을 허용하고 있고, 時價는 決算日의 終價이며, 時價下落 판단에 대한 比率이 없이 일반적인 重要性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美國規定에 비추어 우리나라規定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① 個別法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種目別 基準은 폐지하고 總計基準으로 一元化한다.
- ③ 原價로의 評價增은 허용되어야 한다.
- ④ 時價는 決算日의 終價가 되어야 한다.
- ⑤ 30% 基準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5%정도 또는 會計擔當者나 會計士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投資資產의 평가

投資資產은 企業會計基準에서 證券去來所에 상장된 株式은 有價證券의 규정을 준용하나. 上場 안된 株式은 發行會社의 財務狀態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상당한 減額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경우는 당해 會社의 株當 純資產價額이 取得 당시의 株當 純資產價額의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상장된 株式은 關係會社有價證券의 경우 種目別로 低價基準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長期保有 목적의 國債·公債·社債는 取得原價와 額面價額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일정한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價額의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하였다.

美國의 경우 投資資產은 持分證券(株式)과 負債證券(社債)으로 나누고 각기 다르게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持分證券의 評價方法으로는 原價法 외에도 持分法을 인정하고 있는데, 持分法은 投資會社가 被投資會社의 株式을 20%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負債證券은 보통 原價로 평가하나, 有效利子法을 적용하여 社債割引額을 상각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投資資產의 평가에 持分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聯結財務諸表상으로 인정한 것과 상충되고 있다. 持分法을 個別財務諸表의 投資資產 평가에 도입함으로써 聯結財務諸表의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결과가 되고, 財務狀態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의 50% 기준의 문제점을 없애며, 關係會社株式을 처분하지 않는 한 原價로 계상하여 關係會社의 營業成果에 따른 持分變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될 필요가 있다.

(4) 長期性받을어음 · 長期性支給어음의 평가와 不渡어음의 처리

우리나라의 경우 長期性받을어음과 長期性支給어음에 대해서는 보통의 받을어음과 支給어음과 비슷하게 회계처리하고 다만 固定資產과 固定負債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不渡어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計定을 신설하되 固定資產으로 인정하여 其他資產으로 하였다.

美國의 경우 長期性받을어음과 長期性支給어음은 어음의 額面價額과 實受金의 차이는 割引發行差金 또는 割增發行差金으로 계상하여 어음의 상환기간동안 收入利子 또는 支給利子로 상각하고 있다. 이때 계산은 有效利子法에 의한다. 다음 長期性받을어음을 有形固定資產 등과 교환으로 수취하거나, 長期性支給어음을 現金을 받고 발행하나 어음受取人에게 어떤 特權이나 權利가 부여될 경우 또는 有形固定資產 등과 교환하여 발행되는 경우 歸屬利子計算(imputation)이 수행된다. 歸屬利子(imputed interest)는 有效利子率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長期性어음에 대한 有效利子法의 계산이나 歸屬利子計算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므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不渡어음은 우리나라의 경우 其他資產에 분류하여 固定資產으로 하고 있으나, 美國의 경우 貸損償却하거나 回收可能性이 있으면 받을어음에 포함시키고 있다. 回收不能의 받을어음을 資產으로 취급하는 것은 利益測定에 있어서 利益의 過大計上이 되고, 資產評價에 있어서 資產의 過大表示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不渡어음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特別減價償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美國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로 特別償却이 있다. 特別償

却是 企業會計에서 인정하고 있는 正常的 減價償却이 아닌 特別히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 것은 稅制上의 혜택을 기업에 주기 위한 稅法上의 제도로 企業會計의 경상적 발전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에 稅負擔을 경감시켜 投資促進을 기하고자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特別償却是 기업이 減價償却費를 増額 계상하여 세금을 줄여 現金흐름이 유리해지고 利益配當 등 社外流出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기업의 財務構造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나,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減價償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過大償却으로 製品의 原價上昇을 가져 오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特別償却의 존치여부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移延資產 · 移延負債의 축소조정

원래 移延資產이란 장래의 效益을 창조하리라고 기대되는 당기의 지출이고, 移延負債는 장래기간의 收益과 관련이 있어 당기에 발생한 收益을 이연한 것이다. 현행의 企業會計基準에서 試驗研究費, 換率調整借와 貸는 資產 또는 負債로서의 요건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換率差損은 當期費用이라고 볼 수 있어, 차기 이후로 이연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3. 負債의 測定과 資本의 變動

(1) 社債割引發行差金의 債却方法

우리나라에서 社債割引發行差金은 定額法으로 상각되고 있는데, 美國에서는 원칙적으로 有效利子法을 사용하고 있고, 有效利子法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만 定額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有效利子法이 타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有效利子法의 도입은 現價計算制度의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貨幣의 時間的 價值의 개념이 企業會計에 도입될 때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2) 退職金債務와 年金債務

우리나라에는 退職金制度가 있어 退職給與充當金의 계상이 문제되나, 美國에는 年金制度가 있어 年金債務의 계상이 문제되고 있다. 기업은 ①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1年이상 근무자에 대해 30日分 이상의 平均賃金을 계산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② 法人稅法에 의하여 1년간 근속한 使用人の 年間給與額의 10%와 ③ 당해년도 종료일 현재 使用人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推計額의 50%중에서 작은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기업은 이 세 가지 중 평상시에는 退職給與充當金을 적게 설정하다가 景氣好況期나 純利益이 많이 났을 경우에 많이 설정함으로써 利益操作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쁜 會計實務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年金債務의 계산에 대해 企業會計基準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에 따라 年金制度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年金計算에는 保險原價方法(acturial cost methods), 極小一極大計算方法 등도 있어 합리적 계산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流動負債의 借換, 負債의 早期償還, 問題負債調整의 會計

流動負債의 借換은 短期負債가 장기로 再金融되어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고 借換되어 固定負債와 비슷한 성격의 부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流動·固定의 分類基準이 없지만 FASB의 SFAS No. 6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⁴⁾

負債의 早期償還이란 부채를 예정한 만기일 이전에 상환·소각하는 것으로, 이때 負債償還損益이 발생할 수 있어 이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규정에는 없으나, AICPA의 APB Opinion No. 26과⁽⁵⁾ FASB의 SFAS No. 4에⁽⁶⁾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問題負債調整의 會計는 기업의 不渡, 整理 또는 倒產으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달하였을 때의 회계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것으로, 주로 負債調整損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FASB의 SFAS No. 15에 규정을 두고 있다.⁽⁷⁾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우리나라 규정에 도입될 것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負債依存度가 크므로 負債에 대한 회계처리를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資本轉入制度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자주 이용되지 않는 것이 資本轉入制度이다. 이것은 원래 商法上 인정된 제도로 企業會計基準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企業會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資本轉入制度는 영구적인 配當壓力을 초래하여 기업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利益剩餘金을 資本轉入시킴으로써 資本去來와 損益去來를 혼란시키며, 기업의 操作的 會計處理에 이용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資產再評價制度와 特別償却이 資本轉入制度와 어울려 경영자의 操作的 會計處理에 활용됨으로써 근본적으로

(4) FASB, "Classification of Short-term Obligations Expected to be Refinanc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6*. (1975).

(5) Accounting Principles Board, "Early Extinguishment of Debt," *APB Opinion No. 26*. (AICPA, 1972).

(6) FASB, "Reporting Gains and Losses from Extinguishment of Debt,"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4* (1975).

(7) FASB, "Accounting by Debtors and Creditors for Troubled Debt Restructurings," *Statement of Financial Standards No. 15* (1977).

기업의 財務構造를 약화시켜 國際競爭力까지도 약화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資本轉入制度에는 어떤 統制가 있어 資本轉入을 억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株式配當, 株式옵션, 株式워런트의 회계처리

최근 개정된 商法에서 株式配當과 株式워런트(新株引受權附 社債券 이름으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株式옵션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美國에 있는 제도이다.

株式配當은 株主에게 利益이 되는가, 資本化할 금액이 額面價額이 되는가 또는 公正市場價值가 되는가, 株式配當과 株式分割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新株引受權附 社債券에는 평가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 商法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會計處理가 企業會計基準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其他의 制度

(1) 公示制度의 확충

우리나라의 公示制度는 美國의 것에 비하여 質的 및 量的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公示制度의 확충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외에도 政府의 企業規制, 證券管理規制, 會計規制를 위해서도 요망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업의 國際化를 위해서는 國際會計의 조류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會計가 개선되어야 하고, 資本自由化를 위해서는 公示制度가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려져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海外起債를 한다든가 株式・社債券을 외국의 證券市場에 상장하는 등 資本市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公示制度가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시되고 있지 않으나 美國에서 공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5年間 損益情報의 요약
- ② 인플레 會計情報
- ③ 部門別 情報
- ④ 社會責任情報
- ⑤ 豫測情報
- ⑥ 未確定契約(executory contracts)
- ⑦ 中間報告情報로 특히 分期別 情報

(2) 새로운 制度의 도입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會計制度로 美國에 있는 제도중 다음 제도가 있다.

- ① 合併會計
- ② リス會計
- ③ 인플레이션 회계
- ④ 法人稅配分
- ⑤ 現價計算
- ⑥ 部門別 報告
- ⑦ 分期別 報告

이들 제도 중에는 우리나라의 會計實務에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會計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다.

VI. 結語

지금까지 本稿는 우리나라와 美國의 會計를 비교하되, 美·日會計의 우리나라 會計에 대한 영향과 企業會計基準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論文의 結論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정책적으로 고려되거나 앞으로의 企業會計基準의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외국의 특히 日本과 美國의 會計制度를 도입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또 어떤 깊이 있는 會計研究의 수행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會計基準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많은 시험을 거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會計發展에 기여한 바 크지만, 外國의 會計基準은 그들의 文化環境과 社會制度에 알맞는 것이다. 따라서 外國의 會計基準중 우리의 실정에 맞거나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會計基準은 會計研究의 전제없이 확정되는 수가 많았는데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調査研究가 논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日本會計에 의존하였던 만큼 앞으로의 會計는 美國會計를 보다 많이 도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會計의 보다 많은 도입은 國際會計의 조류에 일치하고, 先進的 會計를 따르는 결과도 된다. 日本에서도 美國會計를 품는 경향이 있는 만큼 구태여 후진적인 日本會計를 모범으로 따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社會環境이 유사한 日本의 會計制度를 참고로 하고, 日本에서 논쟁이 된 이유 또는 문제된 것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會計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무비판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도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社會環境에 적합한 會計制度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會計制度를 개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聯結財務諸表는 현재의 우리나라 社會環境에는 결코 알맞을 수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結合財務諸表가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나 채택이 검토되어야 하며 聯結財務諸表 작성의 前段階로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固定觀念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째로,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合法的 粉飾決算을 허용하는 많은 제도가 있다. 資產再評價, 特別償却, 資本轉入, 退職給與充當金 등은 그 예이다. 이러한 기업의 利益操作을 조장하는 회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會計政策 선택의 임의성 보다는 繼續性을 지켜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利益操作은 기업경영자에게 편리한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財務構造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흉이며 國際競爭力を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이다.